

보도시점 2024. 5. 29.(수) 배포즉시 배포 2024. 5. 29.(수)

‘유전자원 출처공개’ WIPO 조약 채택 특허청, 선진국과 공조해 적극 대응

- 유전자원·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출원시 출처공개 의무 부여 -
-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여 특허제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
- 특허청,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 위해 설명회 개최 등 노력 지속 예정 -

특허청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 (이하 ‘조약’)**이 지난 5. 13.(월)~24.(금)까지 스위스 제네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 유전자원 :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

** (영문) ‘WIPO Treaty on IP,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동 조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WIPO 조약 】

- 유전자원·전통지식의 출처 공개 의무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출원시,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또는 입수기관,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지역사회 등의 출처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의무 미준수 시 제재: 출처공개 의무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나, 미준수에 기망의 의도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여 특허제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우리 정부는 금번 외교회의에 외교부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주제네바대표부 윤성덕 대사)을 파견, 동 조약이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규범이 되도록 우리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극 대응하였다.

동 조약은 전반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절충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❶ 우리나라와 선진국 입장에서 핵심쟁점이던 특허출원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 대상과 범위(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제외)’를 명확히 하고 ❷ ‘제재의 한계*’를 고수하였으며 ❸ 향후 조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참석 범위를 계약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WIPO 회원국으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 당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를 무효화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음

동 조약은 향후 1년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15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하면 3개월 후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판단하에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조약 가입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중국, EU, 브라질, 인도, 등 40여개국이 출처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조약이 발효되더라도 당장 큰 변화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 위해 설명회 개최 등 노력 지속 예정>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등 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개도국들은 2010년 체결된 나고야 의정서 상 부과된 의무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AB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처공개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며 동 제도의 확산을 위한 국제규범화를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가 특허요건과 관련이 없으며, 출처공개 의무화는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특허 출원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규범화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특허청은 그동안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23.8월, 12월)하고, 올해 초 국내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국내 바이오기업 10곳 중 9곳은 유전자원 출처공개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특허청은 앞으로도 조약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약 가입국 및 각국의 출처공개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붙임 : 외교회의 개요 및 조약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책임자	과 장	박현수 (042-481-8197)
		담당자	사무관	최교숙 (042-481-8555)

☐ 회의 명

-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문서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

※ Diplomatic Conference to conclude an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 relating to Intellectual Property,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 기간 및 장소

- '24. 5. 13.(월) ~ 5. 24.(금) / 세계지식재산기구 본부(스위스 제네바)

☐ 참석자

- 193개 당사국 정부, 관련 국제기구·NGO 대표 등 1천여명
 - 우리나라 : 駐제네바대표 대사(수석대표) 외 관계부처, 연구기관 전문가 등

☐ 주요의제

-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문서 채택

1. 구성 체계 : 전문 및 22개 조문**2. 조항별 내용**☐ **전문**

- 조약의 취지

☐ **제1조(목적)**

-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이용한 특허 시스템의 효율성, 투명성, 품질 향상

☐ **제2조(용어의 정의)**

- 유전자원의 출처(원산국 등), 관련 전통지식의 출처(원주민 등), 출처공개 발동조건(기반하는(based on)) 등의 용어 정의

☐ **제3조(공개요건 의무화)**

- 체약국은 유전자원/전통지식에 기반한 특허 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 정보를 요구하고, 출원인이 출처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의 선언을 제출

☐ **제4조(비소급성)**

- 조약 발효 전 출원된 특허에 대해서는 출처공개 의무를 미부과

☐ **제5조(제재 및 구제)**

- 제3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허권을 취소·무효·실시 불능으로 하지 않음
- 다만, 기망의 의도에 의한 제3조 미준수의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제6조(정보시스템)**

- 체약국은 유전자원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정보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함

☐ 제7조(기타 국제협정들과의 관계)

- 이 조약은 다른 국제협정들과 상호 지원적인 방식으로 이행

☐ 제8조(검토)

- 조약 발효 후 4년 간 제3조의 공개요건을 특허 이외의 다른 영역(파생물 및 다른 지식재산)으로 확장하는 것 등을 검토

☐ 제9조(이행에 관한 일반원칙)

- 체약국은 조약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채택

☐ 제10조(총회)

- 총회는 제8조에 따른 검토, 제10조의 일부와 제11조 수정, 제14조의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의 소집을 결정, 기술 실무그룹을 구성

☐ 제11조(국제사무국)

- 국제사무국은 총회, 기술 실무그룹을 위한 사무국 역할을 하고, 총회 결의에 따라 외교회의를 준비

☐ 제12조(체약국이 될 수 있는 자격)

- WIPO 회원국

☐ 제13조(비준 및 가입)

- 제12조의 국가는 WIPO 사무총장에게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수 있음

☐ 제14조(개정, Revision)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회의를 통해서만 조약 개정

☐ 제15조(제11조 및 제12조의 수정(Amendment))

- 총회는 투표권자의 3/4 찬성이 있을 경우 제10조의 일부(10.2(a), 10.2(b), 10.2(e), 10.2(g), 10.3, 10.4, 10.5)와 제11조를 수정

☐ 제16조(서명)

- 외교회의에서 조약이 채택된 이후 1년간 WIPO 본부에서 서명

☐ 제17조(발효), 제18조(체약국이 되는 효력 발생일)

- 15개국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WIPO 사무국에 기탁한 3개월 이후 조약 발효

☐ 제19조(파기)

- 체약국이 WIPO 사무총장에게 파기를 통지하고 1년 이후 체약국에 대한 파기효력이 발생

☐ 제20조(유보)

- 조약의 유보는 허용되지 않음

☐ 제21조(언어)

- 조약의 원본은 6개 UN 공용어(영어, 중국어,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구성

☐ 제22조(수탁)

- 조약의 수탁자는 WIPO 사무총장